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고용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9 년 11 월 9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임 중 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화번호 : 02-723-5036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국회의원 원 혜 영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성명 :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명	고용보험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9년 11월 9일
소개의견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자, 15시간 미만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가사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약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43%를 넘고, 임금근로자만을 볼 경우에도 32%를 넘는 수치이다. 이번 경제위기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경제위기의 고통이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으나 이들 대다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되어 있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제위기를 기회 삼아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두텁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구직)급여 제도상의 급여대상, 피보험기간, 지급기간 등을 노동시장 조건에 맞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회차원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며, 이에 본 청원서를 소개하는 바이다.	

소 개 의 원

원 해 영



1. 청원 취지

고용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임. 여전히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신규실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함. 고용안전망 핵심인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

1)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과 일용직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자, 15시간미만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가사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약 1,000만 명¹⁾을 넘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전체 취업자의 43%를 넘고, 임금근로자만을 볼 경우에도 32%를 넘는 수치임.

<표> 2009년 8월 현재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단위: 천 명)

전체 취업자수		23,620	
임금근로자	총수	16,479	
		고용보험적용대상자	12,803
		고용보험가입자수	9,828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3	2,975*
		고용보험 비적용대상1	1,312*
		고용보험 비적용대상2	2,364*
비임금근로자	총수	7,140	
		영세자영업(고용인이 없는 자영업)	4,266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516	
	신규실업자	33	

주: *는 추계치.

1. 임금근로자 적용제외대상자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등. 공무원연금(추계) 1,046천명, 사학연금(추계) 26.2천명, 별정직우체국직원 4.3천명(추계) 등 합계 1,312천명.
2. 임금근로자 적용제외대상자 중에서 5인 미만 농림어업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2007년 이후 부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15시간미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 2,364천명
3.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비적용대상을 제외한 수치로 추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 8월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통계 2009년 8월.

1)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고용보험 비적용대상2+영세자영업자+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 경제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대두되었음. 이번 경제위기의 고통이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으나 이들 취약계층 근로자 대다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되어 있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음.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것임.
- 그러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미적용자 등의 실직확률과 미취업 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년간 실직경험률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 약 20.8%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기업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실직경험률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고용보험가입자의 실직경험률은 12.1%인데 반하여 고용보험미가입자의 실직경험률은 28.3%, 고용보험미적용자의 실직경험률은 47.4%에 달함. 누적 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가입자가 3.9개월인 데 반하여, 고용보험미가입자의 실직경험률은 4.5개월, 고용보험미적용자의 실직경험률은 5.4개월에 달함.
- 따라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구직촉진대책을 마련해야 함.

2) 실업(구직)급여 기능 강화

- 2009년 9월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혜율(수급자수/실업자수) 46%임. 2008년 9월 실업급여 수혜율(39.4%)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이는 경제위기로 일시적인 현상임.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는 2005.8~2008.6 기간 동안 5.9%에 불과함.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비중도 20.9%에 그치고 있음.
- 실직자가 수급자격이 없는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56.4%), 이직사유 미충족(16.5%), 고용보험 미적용(15.4%), 피보험기간 미충족(5.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비수급자격의 이유로 '이직사유 미충족'이 높게 나타는 것은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자발적 이직자를 배제하고 있는 수급요건의 엄격성 때문임.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²⁾에서 일정한 제한 아래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수급요건을 지나

2) 독일 12주, 일본 1~3개월, 프랑스 4개월, 핀란드 3개월, 벨기에 4~26주, 덴마크 3주, 호주 13주, 영국 1~26주 등

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임.

· '18개월 내 180(6개월)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피보험기간 요건은 비정규직 근로와 실직의 증가로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 현실임.

- 구직급여는 평균소득의 5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득대체율도 40%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지난 10여년간 소득상한액이 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수급기간도 평균 4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이처럼 현행 고용보험법 실업급여제도는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실업급여제도 상의 급여대상, 피보험기간, 지급기간 등을 노동시장 조건에 맞게 개선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함.

II. 청원의 주요 내용

1) 구직급여 개선

- 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 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함(안 제58조제2항가목).
- 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까지 연장함(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2) 구직촉진수당 도입

- 가.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를 지칭함(안 제2조제7항).
- 나.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5조제3항).
- 다.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의 종류 중 취업촉진수당의 하나로 신설함(안 제37조제2항제5호).
- 라.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법」 따른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함)를 지급받고 있는 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던 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7조2).
- 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67조의3).
- 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당을 신청한 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소득 등에 관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마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67조의4 및 제67조의5).
- 사.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보 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되,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수급자격 인정의 통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함(안 제67조의6, 제67조의8).
- 아. 구직촉진수당은 150일의 한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함(안 제67조의9).

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봄(안 제113조의 2).

III. 신·구조문대비표

1) 구직급여 개선

현행	개정안
제40조(구직급여의 지급 요건) ① (생략)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 6. (생략) ② (생략)	제40조(구직급여의 지급 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 <u>120일</u>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지급자격의 제한) (생략) 1. (생략)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다. (생략)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지급자격의 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_____ 가. _____ 이직한 후 <u>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u> 나. 다. (현행과 같음)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180일	180일	210일	240일	30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180일	210일	240일	300일	36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240일	300일	360일	360일

비고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구직촉진수당 도입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나.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다.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 8. “구직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67조의6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국고의 부담) ① (생략) ② (생략)	제5조(국고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중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생략)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구직촉진수당
(신설)	제67조의2(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 급여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중 제67조의6에 따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

1.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함)를 지급받고 있는 자

2. 제67조의3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던 자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자

4.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67조의3(구직촉진수당의 신청) 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이하 “구직촉진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그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구직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7조의4(소득 등에 관한 조사·질문) ① 직

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질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설)

제67조의5(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통보) 직
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에 따른 조사·
질문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직촉진수
당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의6(구직의 인정) ① 제67조의5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보 받은
자(이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라 한다)
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한 상태에
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는 인정(이하 “구직의 인정”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②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제67조의3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의 신청을 한 날 또는 구직의 인정이 종료되
는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
지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구직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
촉진수당의 신청을 한 날 또는 직전 구직인정
일의 다음 날부터 그 구직인정일까지의 각각
의 날에 대하여 구직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구직의 인정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자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자가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구
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할 때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의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가 제6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그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설)

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8(구직촉진수당일액) 구직촉진 급여일액은 제67조의5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의 통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제67조의9(구직촉진수당 지급일수 등) 구직촉진수당은 150일의 한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제67조의10(근로활동의 신고) 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구직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구직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활동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9조(준용)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신설)

제69조(준용) —————, 제60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13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구직촉진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 추계

1. 대상자

- 실업자 규모 90만 명으로 추산
-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비경활에서 실업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실업자 10만 명
- 현재 실직자의 43%가 실업급여 수급(2009년 8월). 내년 수급률이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가정

○ 대상 실업자는 다음 두 계층의 합

1) 실업자 중에서 비수급자 = $58.5\text{만}(=90\text{만} \times (1-0.45))$

이 중에서 소득자산 기준에 따른 선별 비율을 30% 정도로 가정할 경우 14.6만

2) 제도도입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비경활에서 실업자로 전환하는 사람
10만 정도로 추계

※ 소득 100-150%인 가구의 인구규모는 약 200만 명, 이 중에서 자산기준으로 1억 이상을 할 경우 약 절반 이상이 탈락하고,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지는 아직 계수가 없음.)

-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 규모를 10만 명 선으로 제한한다고 가정

3) 전체 대상자 약 25만 명

2. 실업급여 일액

- 26,304원($4110 \times 8\text{시간} \times 80\%$)

3. 지급기간

- 최대 5개월 지급
- 현재 보험가입자의 평균지급기간은 약 120을 넘음(2006년 현재 123일)
- 대상자들이 취업애로계층임을 감안하여 약 130일을 가정

4. 소요 재정 추계

- 년 8,549억($=25\text{만명} \times 26.304\text{원} \times 130\text{일}$)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